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19가단2682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피고C(개명전: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최준기

변론 종결2021. 3. 25.

판결 선고2021.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4.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E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8. 4. 접수 제1770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 1)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A이 위 여신거래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F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A이 중소기업은행에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 2) A은 2017. 7. 18. E과 사이에 E 소유의 F 주식 1,500주를 1주당 금액 50,000원으로 정하여 7,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2017. 8. 22. 2,000만 원, 2017. 9. 21. 5,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 3) 중소기업은행은 2018.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2462호로 'A과 E 사이에 2017. 7. 18. 체결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을 취소한다. E은 중소기업은행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 4) A은 2018. 2. 1.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100193호로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2018. 5. 14. 파산이 선고되었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위 3)항 소송을 수계한 뒤 2018. 6. 20. 청구취지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다.
- 5) 서울회생법원은 2019. 12. 23. A과 E 사이의 2017. 7. 18.자 주식매매계약은 부인의 대상이므로, 'E은 원고에게 7,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19가단100279).

나. 피고와 E의 관계 및 E의 증여

- 1) 피고는 2004. 3.경부터 E과 교제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다가, 2014. 5. 28. 혼인신고를 하였다.
- 2) 한편, E은 2013. 10.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2017. 8.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같은 날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3) 피고와 E은 2018. 3. 2.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의사 없음에도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E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부담하였으나, 매수인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E 명의로 해둠으로써 피고가 E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피고가 E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그 소유자 명의 회복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다.

3.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G은행으로부터 1억 2,9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7. 8. 4.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대출금 채무는 123,394,240원인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도 위 대출금 채무의 약정이자가 E의 G은행 계좌에서 납입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채무를 인수하지는 않았으나, 2018. 1.경부터 E에게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약정이자를 송금하고, 원금 중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사해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E에 대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반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9,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애초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와 E이 공동으로 매수하려고 했었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12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억 400만 원이었던 점, 매매대금 중 1억 2,900만 원은 E 명의로 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 점,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신용불량 상태에서 회복한 후 E에게 공동명의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 및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부담하였다거나,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이 일방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E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인지 여부 2017. 8. 4.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와 E이 협의이혼 신고를 한 날이 2018. 3. 2.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6,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7.경 E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2017. 가을경 E과 별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와 E이 위와 같이 협의이혼하기 위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쳤을 것이고, 이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간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그 실질이 피고와 E의 재산분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 4, 8, 11 내지 18, 20 내지 29,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서 명의이전 받은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와 E은 2004.경부터 교제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8. 3. 2. 이혼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으로 피고에게 이전된 것이다.

②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억 원이다. 피고는 위 매수대금 7,800만 원 중 약 5,300만 원을 부담하였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이 매수자금 용도로 G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G은행 명의로 마쳐준 채권최고액 154,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고, 그 실제 채무액은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123,394,240원인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부터 E을 통하여 G은행에 위 대출이자를 납부하여 왔고, 2020. 10. 14.에는 대출원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는 E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③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E은 혼인기간 중 외도에 빠지는 등 이혼의 귀책사유가 E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에게 상당한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혼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속옷 가게를 운영하는 등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형성에 상당 정도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⑤ E의 원고에 대한 7,500만 원의 채무를 비롯하여 H은행에 8,326,000원, 기업은행에 14,935,000원, I보험에 9,000,000원, J 주식회사에 10,083,000원의 채무 등을 각 부담하고 있었으나, 위 채무가 일상가사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는 사정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홍지현

별지